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심 사 보 고 서

2023. 12.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4월 5일, 김승원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1년 4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1.09.01.)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2023.04.18.)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3.4.20.)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김승원)

현재 택배기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가 있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배달대행기사(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취업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코로나19로 배달대행업체(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이용이 증가하며 배달대행기사의 범죄를 우려하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음.

지난 2019년 10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가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31,051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2021년 2월에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서 배달대행기사가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사건이 기사화되기도 하였음. 여론의 심각성을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인 가구 및 여성 가구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배달대행업 취업 제한을 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바 있음.

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게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및 영업점이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게 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지민)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 범위 확대(오영훈의원안 제2조)

가. 개정안의 내용

오영훈의원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해당되는 운송수단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 4. ~ 7. (생 략)	법률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이륜자동차, 전동킥보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거나 도보의 방법으로---------- 4. ~ 7. (현행과 같음)

나.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운송수단 확대에 관한 업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고, 이륜자동차는 사고 시 운전자의 부상확률이 높고 속도가 빨라 도심 주행 시 교통법규 위반 등 교통질서를 해치는 정도가 비교적 큰 반면 승용차나 전동킥보드 등은 인적사고 발생 가능성이나 사고의 경중이 이륜자동차보다 경할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까지 주류적인 운송수단은 이륜자동차인 점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의견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당시 화물운수업계는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승용·승합차 등 무분별한 운송수단이 확대될 경우 자가용 승용차 등이 난립하여 화물운송시장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여 법 제정을 끝까지 반대하였으며, 이해당사자 간 오랜 협의 끝에 현재와 같이 운송수단을 제한하여 법이 공포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법 시행을 앞두고 개정안과 같이 소화물배송 운송수단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은 화물운송업계의 희생과 양보를 통해 합의된 내용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음. 교통법규 위반이 난무하며 행정제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륜자동차 운행 상황을 외면하고 법 정비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운송수단의 확대만을 우선

시하는 본 개정안은 재검토 되어야 함.

3)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의견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소형화물의 택배물량 전환 등으로 개인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송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수익도 악화되고 있음. 그런데 승용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가능해질 경우 화물차주의 수익 악화로 시장안정성이 저해되고 현행 운송사업 공급제한 정책(허가제)과 배치되며, 화물차를 이용한 여객운송을 엄격히 제한하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여객운수사업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됨. 승용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이 가능해질 경우 주선사업 허가도 불필요하므로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이라는 시장의 기본질서가 붕괴되게 됨. 즉 개정안의 내용은 법 제정 시 업계가 강력 반대했던 사항이고 국회, 정부, 운수사업자 3자 합의에 따른 상생협약('20. 12. 9)에 위배되는 사안이므로 반대함.

4)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의견

운송수단 확대가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배달라이더의 고용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여 반대함.

다. 검토의견

현행법(2021.1.26. 공포, 2021.7.27. 시행)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서 운송수단이 이륜자동차로 한정되어 있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운송수단의 범위는 입법 논의 당시부터 많은 협의를 거친 사안임. 당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2100685호,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 등 가목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안번호 제2104473호, 박홍근의원 대표발의)에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운송수단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었음.

당시 국토교통부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서 나타날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확산에 대비하여 운송수단의 범위를 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음. 그러나 화물업계가 다른 운송수단을 인정할 경우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택배서비스사업 및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2020.12.9. 화물운수사업 상생발전 협약식에서 4개 화물연합회(일반·개별·용달·주선)-국회의원-국토교통부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이륜자동차'로 한정하는 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현행법과 같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정의를 규정하게 되었음.

현행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업태는 이륜자동차를 기반으로 음식물 등 근거리 배송을 수행하는 배달대행업과 서류 등을 빠른 시간 안에 배달해주는 퀵서비스업이 있음.

그런데 일각에서는 드론, 배송 로봇, 전동킥보드, 도보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운송형태를 현행법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1] 당초 「생활물류서비스산업

1)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제1807호)-「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2021.3.8.

발전법안」을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당시에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부대의견으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도입 방안을 강구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과 같이 운송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논의할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입법연혁과 동법이 최근 시행(2021.7.27.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운송수단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는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성범죄자등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제한 등(김승원의원안 제19조의2, 오영훈의원안 제17조의2, 홍문표의원안 제17조의2, 구자근의원안 제19조의2 등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김승원의원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를 금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가 종사자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도록 하며, 해당 범죄 전력이 있는 사

람을 채용할 경우 사업자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취업을 제한하려는 것임.

오영훈의원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취업을 제한하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문표의원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 종사를 금지하려는 것임.

구자근의원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범죄경력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가 운전자를 채용할 때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

현 행	김승원의원안	오영훈의원안	홍문표의원안	구자근의원안
법률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신 설>	법률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법률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법률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17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법률 제17911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현 행	김승원의원안	오영훈의원안	홍문표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인증사업 종사의 제한)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는 종사할 수 없다.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	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	

현 행	김승원의원안	오영훈의원안	홍문표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사업자는 그 사업의 시설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	

현 행	김승원의원안	오영훈의원안	홍문표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조 제 2 호 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신 설>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1. ~ 2. (현행과 같음) 3.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			

현 행	김승원의원안	오영훈의원안	홍문표의원안	구자근의원안
	결한 경우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신 설>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을 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제19조의2(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현 행	김승원의원안	오영훈의원안	홍문표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

현 행	김승원의원안	오영훈의원안	홍문표의원안	구자근의원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1호 각 목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범죄경력 조회 회			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현 행	김승원의원안	오영훈의원안	홍문표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신서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면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그 사람과의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

현 행	김승원의원안	오영훈의원안	홍문표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의4(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19조의2에 따른 범죄경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현 행	김승원의원안	오영훈의원안	홍문표의원안	구자근의원안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9조의3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

현 행	김승원의원안	오영훈의원안	홍문표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신 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에 대한			

현 행	김승원의원안	오영훈의원안	홍문표의원안	구자근의원안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2.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계약 해지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 징수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나.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1) 국토교통부 의견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의 종사제한, 범죄경력 조회 및 미이행 시 과태료 신설 규정에는 동의하나, 성범죄자 채용 시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임의취소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범죄 등 전력자에 대해 인증사업자에게 채용계약 해지를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은 집행을 위한 행정력이 과도하게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범죄경력 조회의 경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배달기사는 택배기사와 달리 종사자격 제도가 없어 정부가 범죄경력을 조회하기보다는 사업자가 종사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조회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교통법규 위반·범죄경력 관리 역시 종사자격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이를 관리하고 공개할 현실적인 필요성이나 집행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마찬가지로 채용기록 관리의 경우 배달업은 종사자격 제도가 없어 이를 기록·관리할 필요가 없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의견

성범죄자 등 종사제한에 대해 찬성하나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않은 업체의 인증을 취소하는 방식이 아닌 근로계약 시 경력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어야 함.

다. 검토의견

각 개정안은 성범죄자·강력범죄자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으로, 종사제한 대상범죄 및 종사제한 대상자의 범위와 기타 제재에서 내용상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개정안별 주요내용 】

구분	김승원의원안	오영훈의원안	홍문표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종사제한 대상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구분	김승원의원안	오영훈의원안	홍문표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종사 제한 대상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범죄 경력 확인 의무	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종사(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	좌동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요청
채용 기록 관리	-	-	-	사업자가 운전자 채용 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 기록·관리
교통 안전 기록 관리	-	-	-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륜자동차 등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범죄경력 기록·관리
계약 해지 요구	종사자의 범죄행위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요구	-	-	-
사업자 제재	해당 범죄자와 운송위탁(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자인증 취소	-	-	-
과태료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영업점, 계약 해지 요구를 거부 또는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구분	김승원의원안	오영훈의원안	홍문표의원안	구자근의원안
	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각 개정안은 성범죄자·강력범죄자가 면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종사자 또는 종사를 희망하는 자에 대한 범죄경력 확인 등의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있음. 다만,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제한 제도 등의 도입여건 검토 필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자유업으로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2)]

2) **제17조(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편리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반면,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사제한 제도는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관리 제도와 종사제한 제도, 범죄경력 조회 제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 제도를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는 택배서비스사업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와 종사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관련 각 제도 규정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교육·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에도

불구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의 운전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한정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를 채용할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48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및 연합회(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 등을 기록·관리하는 일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안전운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사항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인명사상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도지사 및 사업자단체에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관리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①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3)]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20년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에 따른 죄: 20년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죄: 6년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6년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각 호에 따른 죄: 2년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20년

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으로 자구개정('21.1.26.)되었는데 동법 시행령의 자구가 아직 개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즉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종사자만 고용하도록 하는 택배서비스사업과 비교할 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자유업으로서 종사자에 대한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에, 자유업 종사자에게 종사제한 제도, 범죄경력 조회 제도,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 제도 등 제반 제도들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시행(2021.7.27.) 이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업무가 2021년 8월 현재 준비 중인 상태임.[4] 이에 아직 인증사업자의 면면이나 종사자 규모 등이 공식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어 종사제한 제도의 도입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보임. 또한, 인증을 받지 않아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 가능하므로 인증사업자가 아닌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의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제도 도입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각 개정안은 인증을 받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뿐만 아

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8. 현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인증과 관련한 인증심사대행기관 지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2021년 심사대행기관 지정 후 심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뒤 2022년 인증사업자 신청을 받고 인증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임,

니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도 범죄자가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5] 김승원의원안, 오영훈의원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한정하여 범죄경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구자근의원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한정하여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안전 기록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 종사제한 대상범죄 및 종사제한 대상자

종사제한 대상범죄는 김승원의원안, 홍문표의원안 및 구자근의원안이 성범죄 및 강력범죄로 그 범위를 넓게 규정하는 반면, 오영훈의원안은 성범죄에 한정하여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음.

김승원의원안, 홍문표의원안 및 구자근의원안의 종사제한 대상범죄 범위는 대체로 유사하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김승원의원안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모든 범죄를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홍문표의원안 및 구자근의원안의 경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제10조부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의2까지의 죄[6] 및 제4장

5) 다만, 안 제17조의2 조제목에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조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음. 동법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이라는 명칭이나 정의는 없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

벌칙에 따른 죄[7]를 제외하고 있음. 오영훈의원안의 경우 종사제한 대상범죄로 강력범죄는 규정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중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음.[8]

【 종사제한 대상범죄의 종류 】

구 분	내 용
「특정강력 범죄의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

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5조의2(예비, 음모)

7) 제4장 벌칙에 따른 죄는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 누설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죄 등으로서, 아래와 같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 제1항 또는 제38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 제3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 제4항(제44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오영훈의원안은 동법 제15조(미수범)를 대상범죄로 규정하면서도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제13조의 미수범을 종사제한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음.

구 분	내 용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및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범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5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죄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죄
	위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 제5조의4(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부터 제65조의2에 따른 죄(마약수출입・제조・매매죄, 매매알선죄 등)

구 분	내 용
법률」에 따른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제2조제1항제1호(「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5조의2(예비, 음모)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	동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죄,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죄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종사제한 대상자와 관련하여, 김승원의원안, 홍문표의원안 및 구자근의원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외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대상으로 규정하는 반면, 오영훈의원안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종사제한 대상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또한, 김승원의원안은 위의 요건에 해당하면 종사자뿐만 아니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로도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제한 대상범죄와 종사제한 대상자의 범위는 홍문표의원안 및 구자근의원안과 같음.

ⅰ)종사제한 대상범죄 및 종사제한 대상자의 범위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과 성범죄자·강력범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9]이라는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적절히 설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성범죄 외에 강력범죄도 종사제한 대상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종사제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종사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자에게도 종사제한의 범위를 같게 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다만, 국토교통부는 김승원의원안과 같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를 모두 규정하더라도 신설되는 종사 제한 사

9) 참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종사제한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 기간인 10년보다 중하게 설정되어 있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유가 현행 택배기사에 적용되는 사유와 유사하고[10], 배달대행기사가 택배기사보다 면대면 서비스 비중이 더 큰 점을 감안할 때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임.

ii)「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죄 중 미수범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제한 규정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5조에 따른 미수범을 종사제한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제14조의 미수범은 종사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의 입법(2018.8.14. 개정, 2019.7.1.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11]이 신설되

10) 택배업과 비교할 때 업무상위력추행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다중이용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음란죄, 허위영상물반포죄가 추가되었으나,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다는 입장임.

11)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면서 동법 제15조(미수범)[12]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개정되었음.[13]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제외하지 않을 경우 오영훈의원안, 홍문표의원안 및 구자근의원안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죄를 범한 기수범(旣遂犯)은 종사제한 대상이 아닌데 미수범만 종사제한 대상이 되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며, 현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제한 대상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제한 대상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2)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u>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u>은 처벌한다.

13) 2020.3.24.개정으로 제14조의2가 , 2020.5.19.개정으로 제14조의3이 신설됨.

참고로, 여객자동차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2021.7.27. 개정, 2022.1.28. 시행)하여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자격 취득의 제한사유에 추가하고 미수범도 종사 제한하였음.[14]

ⅲ) 각 개정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제한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제한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규정되게 되므로 입법체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제한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옮겨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15]

ⅳ) 부칙 적용례와 관련하여 김승원의원안은 이 법 시행 당시 소화물

---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에 따른 죄

15) 다만, 택배서비스사업 종사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 규정(제10조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규정(제23조), 규제의 재검토 규정(제65조의2)이 있으므로 동 규정들을 함께 개정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인 사람에게도 종사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개정안들은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죄를 저질렀으나 아직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이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할 필요성과 해당 범죄자의 신뢰보호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전자격 취득제한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허위영상물반포죄 등을 추가하면서 해당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16]

3) 범죄경력 확인의무 및 범죄경력 미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김승원의원안 및 오영훈의원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범죄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김승원의원안 제19조의2제2항, 오영훈의원안 제17조의2제2항), 구자근

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2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적용례) ② 제24조제4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원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범죄경력자료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구자근의원안 제19조의2제2항), 김승원의원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하여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김승원의원안 제51조제1항제1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범죄경력의 조회제도는 성범죄자·강력범죄자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의무를 지울 것인지 문제됨.

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와 달리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배달기사의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 제도와 같은 자격제도가 없으므로 정부가 종사자 채용 여부를 알 수 없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아니라 업체가 종

사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자의 경우 구자근의원안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뿐, 사업자나 영업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김승원의원안 및 오영훈의원안처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나 영업점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 의무를 부과할 경우 동일한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임에도 각 사업별로 범죄경력 조회 의무자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재 배달대행 및 퀵서비스 시장은 취업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시장 진입이 자유로운 구조로 고용상태에 변동이 큰바, 모든 인증사업자와 영업점이 종사자에 대해 일일이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한 후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력의 과부하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범죄경력 조회 관련 타 입법례를 보면,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한 후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해당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7]

---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2조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비업법」
제17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② 경비업자는 선출·선임·채용 또는 배치하려는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된 사무소, 출장소 또는 배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제3호·제4호,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이 제5조 각 호, 제10조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ⅱ)김승원의원안에서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종사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보임. 다만, 과태료의 수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서는 범죄경력 조회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있음.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중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을 받은 자'인데, 이와 같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시장질서 위반행위와 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를 하지 아니한 행위의 행정질서 위반 정도를 비교하여 볼 때 후자가 과태료 수준에 차등을 둘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따라서 현행 과태료 수준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계약해지 요구, 계약해지 요구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범죄자와의 계약 체결 시 인증취소

김승원의원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해당 종사자와의 운송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도록 하고(김승원의원안 제19조의2제3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요구를 불이행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김승원의원안 제51조제1항제2호), 성범죄자·강력범죄자와의 운송 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인증을 취소(김승원의원안 제19조제1항제3호)할 수 있도록 함.

ⅰ)국토교통부장관의 계약해지 요구 및 계약해지 요구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 상 계약당사자가 아닌 정부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으로 판단됨. 종사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성범죄자·강력범죄자와 운송위탁 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또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금전적인 제재 방안을 두어 준법성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실효적일 것으로 보임.

ⅱ)인증취소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사업자로 예상되는 사업자가 현재 수 만 명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음.

국토교통부는 이 중 1건이라도 성범죄자·강력범죄자를 채용할 경우 재량 없이 기계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인증 취소사유에 규정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임.

이와 같은 의견을 고려할 때 성범죄자·강력범죄자의 채용을 기속적인 인증 취소사유가 아닌 재량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성범죄자·강력범죄자를 계속적으로 채용하는 등의 법규위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 등의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임.

5) 인증사업자의 종사자 채용기록 관리 및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 관리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택배서비

스사업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해야 함을 전제로 운전업무 종사자의 자격관리 제도와 종사제한 제도, 범죄경력 조회 제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 제도를 연동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종사자에 대한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종사제한 제도, 범죄경력 조회 제도,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관리 제도 등 제반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인증사업자의 종사자 채용기록 관리의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경력 증명서만으로는 실효성이 없고, 해당 기록·관리의무를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 관리의 경우 운전업무 종사자격제도가 없어 국가가 개별 운전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

정보를 알 수 없고, 등록제가 아니라 업체의 자발적인 신청에 기대야 하는 인증제 하에서는 현실적인 법 집행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최인호)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